방사선 안전관리 시행세칙

제정 2013.10.01.
전문개정 2015.10.22.
전문개정 2019.04.30.
개정 2023.03.16.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수원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안전관리규정」, 「원자력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보관,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 대학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구역 수시 출입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용)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2장 방사선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조직 및 기능

제4조(조직) ①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독립적인 방사선안전관리조직을 두며, 그 조직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②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자산팀이 주관한다. <개정 2023. 3. 16.>

③ 총장은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RI)를 소지한 자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임명한다.

제5조(직무) ① 총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발생장치의 취급 및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여 이 세칙 운영상의 책임을 진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총장을 보좌하여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학과의 장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방사선장해 방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방사선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때 총장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4. 「원자력안전법」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방사선 실무작업의 관리감독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주의사항 전달,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나.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 보관, 폐기, 운반 및 방사선 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

다.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라. 분실, 화재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마. 방사선시설(사용시설)의 대한 기술기준의 준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조치에 관한 사항

③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학과의 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학과 내 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선발생장치의 보관, 운반, 사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사고·위험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이하 “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의3의 기준을 준용한다.
3. 대리자 지정 절차 : 대리자 지정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의3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소 안에 비치한다.
4. 기타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 간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조치한 경우에는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별도로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 안전관리규정의 각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분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상호 부재시 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포함
다.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 제출하는 업무분장에 방사선안전관리자 상호 부재시 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 포함

⑥ 본 조의 직무별 담당자는 방사선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사용에 관한 사항

제6조(구매관리)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구매, 인수, 보관 등의 행위를 직접 담당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에서 구매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지명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사용학과)는 별지 제1호서식 구매요구서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구매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구매담당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허가 받은 범위 내에서 구매, 수령, 보관 및 운반하여 안전하게 사용, 보관 및 운반될 수 있도록 구매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7조(사용기준) ① 방사선발생장치의 반입 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② 허가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③ 방사선발생장치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④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차폐(遮蔽)벽 기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하여야 한다.

2.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3.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훈련 등을 통해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⑤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⑥ 방사선관리구역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⑦ 엑스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관리구역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 엑스선발생장치를 이용한 실습교육 시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기기를 조작할 때 인체 조사를 절대 금하고, 교육용 인체모형(phantom)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처리 및 인도

제8조(보관·저장기준) 방사선발생장치를 보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하지 아니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는 도난·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범 및 보안관리 등의 조치를 하고,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에는 자물쇠 장치를 하며,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4. 보관시설 또는 보관함에는 방사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기준) ① 대학 내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를 폐기할 때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를 완전 분해 및 파쇄 후 해당 증빙 사진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생장치의 튜브를 파쇄하여 수량을 변경한 경우에는 파쇄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등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

제10조(방사선량률측정) ① 고정된 방사선 차폐시설 안에 있는 방사선발생장치는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은 매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차폐시설 외부의 3지점 이상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제11조(피폭방사선량의 측정) ①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시설의 일시출입자로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될 우려가 있는 자는 출입할 때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및 보존) ① 방사선량률 측정에 관한 사항(방사선량률 측정장부)은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측정장부에 기록하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종사자 피폭선량 장부)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기 전 및 종사기간 중에 측정 및 기록하여 사업폐지 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기록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와 같다.

제6장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

제13조(보관 및 관리) ①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설 등의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률 등의 측정 시 오차를 방지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주 주기적으로 배터리 확인 및 방사선측정기의 정상동작 유무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정) ① 방사선안전관리장비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하는 검·교정기간 마다 보정하되 제작사가 교정주기를 권고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②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검·교정필증을 해당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교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장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

제15조(피폭방사선량의 평가) 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열형광선량계(TLD)판독은 외부 전문 서비스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판독된 개인피폭선량은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록은 한국동위원소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판독결과를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측정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피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안전조치를 취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 과 피폭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된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선량한도는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제4조(선량한도의 적용)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선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자 중 1분기의 피폭방사선량이 12.5 밀리시버트(1.25렘)를 초과한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6조(판독특이자) ① "판독특이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종사자 등을 말한다.

1. 선량계의 착용기간 동안의 선량판독 결과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
2. 착용한 선량계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선량판독이 불가능한 자
3. 선량계 교체기간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

②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판독특이자에 대하여 판독업무자 및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판독업무자는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판독특이자의 인적사항 및 선량판독 결과 등을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판독을 위탁받은 판독 업무자의 경우 동시에 총장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법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다.
3. 총장은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연간 선량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조(개인선량계의 관리)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착용한 주선량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선량을 판독한다.

1. 필름선량계 :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2. 열형광·유리선량계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3. 수시출입자가 착용한 선량계의 선량판독은 제1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출입 종료 시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보조선량계 등을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지급하여 단시간 작업에 따른 피폭선량을 판독함으로써 과피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주선량계 및 보조선량계를 주기적으로 지급하며, 선량계 교체 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착용한 선량계를 직접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선량계 등은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의 측정 시 오차를 방지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 비치한다.

⑤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월 주기적으로 보조선량계를 점검하여 정확한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제8장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교육훈련

제18조(교육) ①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물론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시설보수 등을 위한 방사선시설 출입자, 시설 견학자 및 방문자가 방사선원이나 그 어떤 행위로 인해 불필요한 방사선피폭을 받지 않도록 하며, 방사선피폭 시 올바른 대응조치를 강구를 위하여 필요 시 방사선 안전 취급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은 자체교육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③ 기존 종사자 및 신규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체적으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80점 이하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관련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년도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및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다음 계획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3.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4. 교육내용 및 기자재
5. 교육방법
6. 교육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7. 기록의 유지

제9장 방사선장해방지

제19조(방사선안전관리구역 설정) ①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방사선량률이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이상인 구역을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② 방사선관리구역 내에는 일반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때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제20조(건강진단)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진사항
   가. 방사선피폭증상의 유무
   나. 피폭증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작업장소·작업내용·작업기간·피폭선량 및 방사선 장해의 유무
   다. 기타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
2. 검사 또는 검진할 부위 및 항목
   가.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적혈구 수 및 백혈구 수
   나. 말초혈액중의 백혈구 상(像)
   다. 피부
   라. 눈

3. 제2호의 검사 또는 검진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4.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진·검사 및 검진의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방사선시설에 처음 출입하는 자 : 출입하기 전
나. 방사선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자 : 매 1년
다. 방사선시설에 상시 출입하는 자중 1분기의 피폭방사선량이 12.5 밀리시버트(1.25렘)를 초과한 자 : 초과할 때마다
5.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할 때마다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록·보존한다.
가. 실시 연월일
나. 대상자 이름
다. 건강진단 의료기관
라. 건강진단 결과
마. 건강진단결과에 근거하여 강구한 조치
6. 건강진단을 받은 자는 건강진단을 할 때마다 기록 사본을 교부한다.

제21조(방사선시설의 점검) 방사선장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9조와 같이 정기적으로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기록 및 보존한다.

제10장 방사선장해에 대하여 보건상 필요한 조치

제22조(조치사항)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수시출입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 및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의 단축·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한다.

제23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지진·화재·홍수·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원자력관계시설 등에 고장 등이 발생하여 원자력관계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고장 등의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장 등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③ 방사성물질 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제한구역경계에서 공기중 및 수중 허용농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농도를 초과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원자력관계시설 및 제한구역 내부에 있는 자 또는 부근에 있는 자에 대한 피난 경고
2.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구출·피난 등의 긴급조치
3. 긴급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의 방사선 피폭 방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
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
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제11장 기록과 비치

제24조(기록장부 및 비치) 방사선 작업업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 보존한다.
1. 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취득일, 종류, 용량 및 대수 :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구입 대장
2.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일자, 목적, 장소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부) : 별지 제3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 별지 제6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3.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및 수량, 폐기일시, 방법,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폐기장부) : 별지 제4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폐기기록부
4. 개인 피폭선량 측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5호서식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
5. 개인 의료검진 결과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보고, 별지 제11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6. 방사선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교육, 훈련장부) :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작업자 교육기록부
7. 방사선량률 측정에 관한 사항 : 별지 제7호서식 피폭선량 기록부
8.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구매요구서
9. 기타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기록장부

제25조(보존연한) ① 제23조의 장부 기록사항 중 제4호 및 제5호의 기록은 사용폐지 시까지, 제7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② 제23조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12장 사고조치 및 대책수립

제26조(위험시 조치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피, 소화, 피난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1. 방사선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이 도난, 소재 불명이 된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선량한도를 초과하

여 피폭된 때
4. 방사선 관계 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5. 기타 원자력 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② 제2호의 사고가 발생한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며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한다.

제13장 분실·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

제27조(사고방지대책) ① 방사성물질 분실·도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시에는 사용시설의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관리하여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용도가 완료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튜브를 분리하여 보관함에 보관하며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고, 주1회 이상 점검하여 선원을 확인한다.
②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시설 내 인화물질의 취급을 억제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을 철저히 수행하여 화재를 예방한다.
③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별표2와 같은 비상연락망과 직무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비상대응태세를 항상 유지한다.
1. 사고발생 시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상 장비를 구비한다.
가. 비상통신수단 (휴대전화, 무전기 등)
나. 소화기, 경고등, 방사능표지 등
다. 개인 피폭선량계
2.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장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 및 권한

제28조(책임 및 권한)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자력안전법 관련 법규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총장을 보좌하며 방사선 이용에 따른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직무 지시 및 감독수행을 거부할 때에는 위반사실 및 직무 거부사실을 서면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총장은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이 규정에 의한 선의의 업무수행 결과 및 원자력안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인사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방사선안전관리조직(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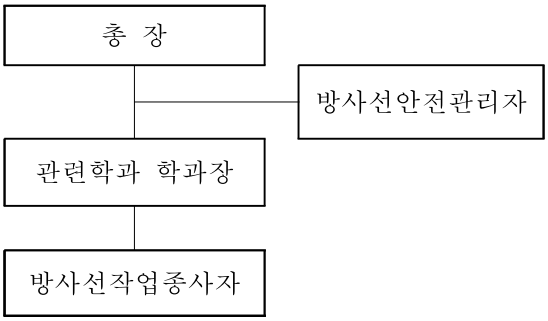

【별표 2】 방사선안전관리조직(교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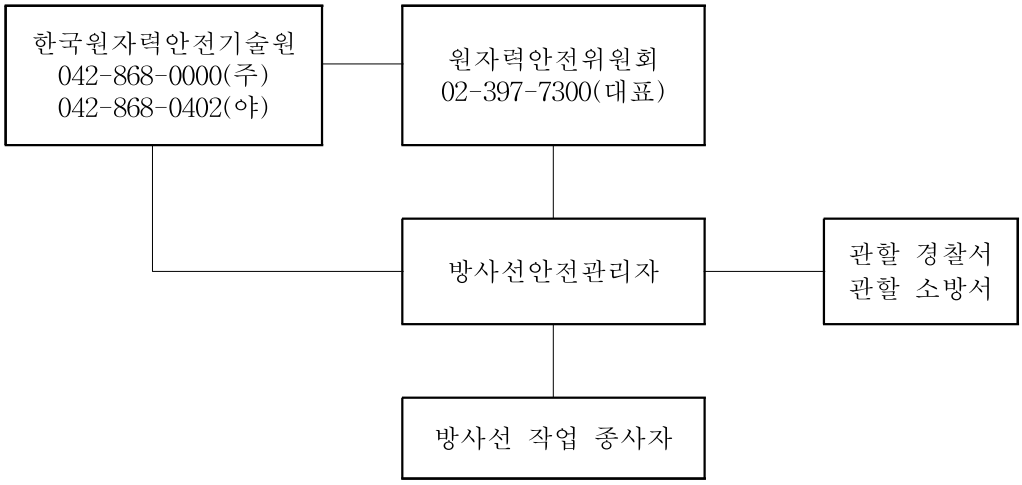

【별표 3】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방사성동위원소등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인력기준 (제 68조의5제1항 관련)		
방사선안전관리자 구분		기준
허가 사용자	1. 생산 또는 판매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교육을 받은 사람
	2. 사용	
	가)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1)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가.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면허를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 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2) 1)이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변허를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나)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변허를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3. 이동사용	
	가)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자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나) 가) 이외의 경우	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변허를 소지한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신고 사용자	사용 또는 이동사용	가.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나.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구매요구서

구 매 요 구 서

구매요구자	성 명		전화번호	
	사 용 학 과		직 위	
구매내역	모 델 명			
	용 량 및 대수			
	제 조 회 사			
	판 매 회 사			
	구 입 예 정 일			
사용예정	사 용 목 적			
	사 용 장 소			
	사 용 기 간			
	RG 취 급 자			

본 학과에서는 상기 방사선발생장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매요구자 : (서명)

학 과 장 : (서명)

방사선안전관리자로서 상기 방사선발생장치의 구입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방사선안전관리자 : (서명)

	선원구입일

1. 사용장소는 원자력안전법 관련 법규에 의거 허가 받은 시설에 한하여 사용장소 기술시에는 필히 사용실명 및 호수를 상세기술 하여야 함.
2. RG 취급자는TLD계약, 건강진단, 방사선안전관리교육을 필한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한하며 자필로 성명을 기재할 것.
3.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사용장소, RG 취급자, 모델, 용량 및 수량등을 허가내역 등과 비교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방사선발생장치 구입 대장

취득 일자	취 득 현 황			사 용 학 과		사 용 목 적	방사선 안전 관리자 서 명	비 고
	모델, 용량	판 매 사	대수	학과명	담당자			

【별지 제3호서식】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록부

사용일자	사용목적	사용장소	모델 (용량)	사 용 자	사용 시간	방사선 안전관리자 서 명	비 고

【별지 제4호서식】방사선발생장치 폐기기록부 (폐기 사진 첨부)

종 류	폐기일시	모 델 명 (용 량)	사용학과 및 장소	수 량	폐기방법	작 업 자(인)	방사선안전 관리자(인)

【별지 제5호서식】 방사선량률 측정기록부

가. 측정기 정보

제조사명		모 델 명	
일련번호		교정일자	년 월 일

나. 측정결과

측정일자	측정장소	방사선량률 [μSv/hr]	측정자	방사선 안전관리자	비고

【별지 제6호서식】방사선작업종사자 이력카드

관 리 번 호								
① 성 명	(국문) (한문)	② 생년 월일		③ 주민등록 번호		④소 속 직 위		사 진
⑤ RI취 급 면허 종류		⑥ 전공 분야		⑦ 최종 학력				
⑧현 주소						⑨자택 전화		

⑩방사선작업경력(타기관 경력포함)		⑪입사 이전에 타 기관에서 방사선피폭집적선량
종 사 기 간	경 력 기 관 명	
~		⑫최초입사시 신체검사결과(검사일자 :) •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 • 적혈구 수 : • 백혈구 수 : • 혈소판 수 :
~		
~		
~		
~		⑬기타 면허취득사항등

【별지 제7호서식】 피폭선량 기록부

종사자 성명 :

연도	연령	외부피폭														총 집 적 선 량 (mrem)
		측정방법	월별 피폭선량 (mr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T														
		D														
		T														
		D														
		T														
		D														
		T														
		D														
		T														
		D														
		T														
		D														

【별지 제8호서식】방사선작업자 교육기록부

년 월 일

1. 교육내용
   가. 교육담당자 :
   나. 교육시간 : 시부터 시까지 ( )시간
   다. 교육장소 :
   라. 교육내용(요약) :

2. 참석자

소 속	성 명	서 명	소 속	성 명	서 명

3. 비고

방사선안전관리자 (인)

【별지 제9호서식】방사선안전관리 검교정 기록부

<table>
<tr><td>장 비 명</td><td colspan="2"></td><td>제 작 사</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모 델</td><td>시스템</td><td></td><td rowspan="2">S/N</td><td>시스템</td><td></td></tr>
<tr><td>검출기</td><td></td><td>검출기</td><td></td></tr>
<tr><td>검출기형태</td><td colspan="5">☐ 공간선량 측정용 ☐ 표면오염도 측정용</td></tr>
<tr><td>검교정일</td><td>검교정기관</td><td>교정계수(Low)</td><td colspan="2">방사선안전
관리자서명</td><td>비 고</td></tr>
<tr><td></td><td></td><td></td><td colspan="2"></td><td></td></tr>
</table>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보고(제17조제2항 관련)

기관명 : 기관코드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방사선작업기간	백혈구수 (WBC, /μL)	혈소판수 (PLT, 10^3/μL)	혈색소량 (Hb, g/dL)	특이사항

방사선안전관리자 : (서명)

붙 임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별지 제11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의료기관 작성용]

<table>
<tr><td rowspan="2">종사자</td><td>성 명</td><td></td><td>성별</td><td></td><td>나이</td><td></td></tr>
<tr><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7">건 강 진 단 결 과</td></tr>
<tr><td>문진</td><td colspan="6">■ 과거 질병력:
■ 가족력:
■ 최근 특이증상 (※급격한 시력저하 등):
■ 방사선 작업과 관련된 기타 특이사항 (※해당 경우에 작성):</td></tr>
<tr><td rowspan="3">일반혈액
검사결과</td><td>백혈구(WBC)</td><td colspan="5">/μL</td></tr>
<tr><td>혈소판(PLT)</td><td colspan="5">10^3/μL</td></tr>
<tr><td>혈색소(Hb)</td><td colspan="5">g/dL</td></tr>
<tr><td colspan="2">일반혈액검사 판정소견</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채혈일</td><td colspan="5">년 월 일</td></tr>
</table>

의료기관명 : (직인)

연락처(전화):

담당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서명 : (서명)